## 대학설립 • 운영 규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 21.] [교육부령 제324호, 2024. 3. 2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

제2조(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)

제3조(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)

제4조(대학설립인가 신청)

제5조(심의결과의 제출)

제6조(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)

제7조(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)

제8조(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)

제9조(겸임교원 등 산정기준)

제10조(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)

제11조(소득의 범위)

제12조(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)

제13조(제출기간등의 조정)

제14조(교사의 임대)

##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



[시행 2024. 3. 21.] [교육부령 제324호, 2024. 3. 21., 일부개정]

교육부 (대학규제혁신총괄과) 044-203-6916 교육부 (대학경영혁신지원과) 044-203-6959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대학설립・운영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2. 28.>
- 제2조(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) ①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를 설립·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·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5. 25., 2001. 1. 31., 2006. 2. 28., 2008. 3. 4., 2013. 3. 23.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<개정 1998. 5. 25., 25.,
  - 1. 대학의 종류, 명칭, 위치, 학과・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(이하 "학과등"이라 한다),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
  - 2. 교사건축계획
  - 3. 교지확보계획
  - 4. 교원확보계획
  - 5. 대학재정운영계획
  - 6. 교육과정운영계획
  - 7.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

2006. 2. 28., 2024. 3. 21.>

- ③「사립학교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·경영하려는 자는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제 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16.>
-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7. 16.>
- 1. 정관변경계획서(변경사유서 및 신・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)
- 2.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
- 3.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
- 4.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(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)
- 제3조(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)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 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1998. 5. 25., 2001. 1. 31., 2008. 3. 4., 2013. 3. 23., 2015. 7. 16.>
  [제목개정 2015. 7. 16.]
- 제4조(대학설립인가 신청) ①「고등교육법」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5. 25, 2001. 1. 31, 2006. 2. 28, 2008. 3. 4, 2013. 3. 23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<개정 1998. 5. 25.>

- **제5조(심의결과의 제출)**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·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5. 25., 2001. 1. 31., 2006. 2. 28., 2008. 3. 4., 2013. 3. 23., 2024. 3. 21.>
- **제6조(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)**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5. 25., 2001. 1. 31., 2006. 2. 28., 2008. 3. 4., 2013. 3. 23.>
  -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.<개정 2001. 1. 31, 2008. 3. 4, 2013. 3. 23.>
- **제7조(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)** 대학을 설립 · 경영하는 자는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,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5. 25., 2001. 1. 31., 2006. 2. 28., 2008. 3. 4., 2013. 3. 23., 2014. 2. 24., 2024. 3. 21.>
- 제8조(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)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(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)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(이하 "총정원"이라 한다)을 1천명(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)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6. 2. 28.>
  - 1.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

2.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

-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(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)미만인 총정원을 500명(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)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06. 2. 28.>
- 1.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

2.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

③ 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(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)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(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)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

## 설 2024. 3. 21.>

1.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

2.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

제9조(겸임교원 등 산정기준)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.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. <개정 2002. 3. 8.>

[제목개정 2002. 3. 8.]

- 제10조(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) 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수입,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으로 한다.
  - ②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별표 3에 따른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으로 한다.
  - ③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  - 1.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: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
  - 2. 대학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: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합한 금액

[전문개정 2024. 3. 21.]

- 제11조(소득의 범위)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.
- **제12조(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)**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1998. 5. 25., 2001. 1. 31., 2006. 2. 28., 2008. 3. 4., 2013. 3. 23.> [제목개정 1998. 5. 25.]
- **제13조(제출기간등의 조정)**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1. 31., 2008. 3. 4., 2013. 3. 23.>
- 제14조(교사의 임대)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"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"이란「도시・군계획시설의 결정・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4. 3. 21.]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**부칙** <제324호,2024. 3. 2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